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서류 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안 강화 필요
- 2)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서류의 질병인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
- 3)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서류의 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안 제13조)

- 1)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사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위촉 권한만을 두고 있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 신설 필요
- 2) 행정관청의 장이 수산생물방역사를 위촉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공무원 외 민간인 위촉 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비 및 여비 지급 근거 마련
- 3)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수산생물방역사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과 임기를 마련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

다.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시방법(제14조의2 신설)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병성감정 대상, 병성감정 실시기관, 병성감정 의뢰·신청방법, 정밀검사 대상 질병, 병성감정 실시절차, 병성감정 결과조치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3) 국가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 방법에 통일성을 기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4조의3 신설)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기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신청, 현지조사 및 평가, 지정 및 변경, 교육 및 감독,
검사능력관리,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3)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학조사대상 등(안 제14조의2 조문이동, 안 제15조)

- 1) 역학조사 관련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업무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항 통합 필요
- 2) 시행규칙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및 제15조(역
학조사)를 제15조로 병합
- 3) 유사조항 통합에 따른 법령체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안 제23조의2 신설)

- 1)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하여 수출수산물질병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2)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취소 등의 관리 절차 마련
- 3)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수산동물의 교역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정비(안 제27조)

- 1) 수입금지물건 등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물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산생물검역관의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2)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수산생물검역관이 확인한 때에는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하도록 함
- 3)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수입검역과 휴대품검역의 이원화된 행정 조치 단일화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아.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안 제27조의2 신설)

- 1) 위생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하여 관리 필요
- 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을 위한 절차 등 마련
- 3)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 관리함에 따라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검역 체계 구축이 기대됨

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안 제27조의3 신설)

- 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현지점검을 할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2)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등과 현지실사 계획을 사전 통보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현지실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 3) 외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진국형 질병관리 체제구축이 기대됨

차. 수입중단 조치 등(안 제27조의4 신설)

- 1) 법 제25조의3 수출국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
- 2)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전파 우려가 있는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 시 수출국을 통해 관련사유 및 시작일자 등을 해당 시설 운영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 3) 외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확산의 사전 차단이 기대됨

카. 유독·유해물질 검사 기관 확대(안 제29조)

- 1) 유독·유해물질 검사 시 분석기간 소요에 따른 폐사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외부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확대 필요
- 2)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3) 검사기관 확대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타. 수입검역시 신청서류 정비(안 제30조)

- 1)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 등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및 중량확인서 제출 대상을 민원인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정비 필요
- 2) 수입검역시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중량확인서는 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 수입검역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개선함

3)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명확화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과. 수출검역 신청 절차 개선(안 제34조)

1) 법 제31조제4항 수출검역 일부 면제 규정 신설에 따른 정밀검사 완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 마련 필요

2)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하고 질병 모니터링을 받은 경우 지정검역물의 수출검역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검역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중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서비스를 개선 및 수산생물의 해외수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하.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절차 개선(안 제35조)

1)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시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3) 제출 서류 간소화로 민원서비스 개선이 기대됨

거. 폐업 등의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1) 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된 검역시행장의 지정 취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정보를 요청하는 등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2) 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된 검역시행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3) 검역시행장 지정 취소를 위한 정보 확인 방법 마련으로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너.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선(안 제37조)

- 1) 해외 신종질병 피해발생 등 긴급한 대응 필요 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하고, 사후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필요
- 2) 수산생물질병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수입제한 등 긴급 조치 이후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동물보건 기구의 영문명칭 현행화
- 3) 해외질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국내 수생태계 및 양식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제도에 국제표준명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더.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과 보존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0)

- 1) 법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 검안부에 적어야할 기재사항과 보존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수산질병 관리원에 원본을 1년간 보존하도록 함
- 3)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부와 검안부의 작성과 보존방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러.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변경 신고서 서식 통합(안 제37조의11)

- 1) 행정안전부의 민원서식 간소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서식 개정 필요
- 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서식을 통합
- 3) 서식 통합에 따른 민원인 편리성 확보

며. 수수료 면제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병성감정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 수입검역의 방법을 수산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경우 검역수수료 면제가 필요함
- 2) 국가·지자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병성감정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 수입검역의 방법을 수산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경우 검역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3) 정밀검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산물의 수출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을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서류의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축”을 “위축 또는 임명”으로, “한다”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입”을 “출입 및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질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한다.

4. 그 밖에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시방법)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임상검사: 수산생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2. 정밀검사: 병리조직, 혈청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실험기자재 및 검사능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의3호 서식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지

정변경)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신청서의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의3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이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변경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병성감정책임자 또는 담당자

3. 소재지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교육·감독, 검사능력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 업무 평가와 제6항에 따른 교육, 감독, 검사능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역학조사)”를 “(역학조사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2”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체장괴사병

2. 그밖에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되었거나 양식산업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영업의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단, 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2. 양식생물 사육현황(양식시설에 한한다.)

3. 시설 평면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증 원본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

2.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3.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품종

⑥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⑦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또는 수출수산물생산시설 개선·보수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개선·보수 명령(이하“중지·개선·보수 명령등”이라 한다)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등록 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시설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폐업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수산생물검역관은 법 제25조제1항”으로, “따른”을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물건 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로,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를 “명령을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입금지 휴대물품”을 “수입금지물건 등 휴대물품”으로, “적어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① 법 제25조2의제1항에 따라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등록신청서와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이 해당 수출국 정부에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 검역물을 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명칭
2. 국가명 및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 ③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이전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변경등록신청서를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신고 전까지 지정검역물을 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정검역물을 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수입검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정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직접 요청 할 수있다.
- ⑧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3(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외수산물생산시설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물생산시설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고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3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수입중단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3항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당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운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해외수산물생산시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를 “, 법 제28조제1

항,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독·유해물질은 수입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검역증명서 원본”을 “검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을 “수입허가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과건검역증명서 원본”을 “과건검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따른다”를 “따르며, 이 표지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을 “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1조

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출수산물생산시설로 등록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을 생략하며,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서류”를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32조제6항제3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OIE)”를 각각 “(WOAH)”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을 “조치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이후 수입위험분석을 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변경 여부”를 각각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 여부”를 “변경”으로 한다.

제37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7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산질병관리원에 원본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7조의11제4항 중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수수료의 면제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 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3. 제29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방법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경우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OIE)”를 “(WOAH)”로 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종묘”를 “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creatures”를 “organisms”로, 같은 앞쪽 중 “Creature”를 “Organism”로 하며, 같은 앞쪽 중 “Director General”를 “Director”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바목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을 “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creatures”를 “organisms”로, 같은 앞쪽 중 “Creature”를 “Organism”로 하며, 같은 앞쪽 중 “Director General”를 “Director”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5항 중 “관상용으로 적고, 괄호 안에 판매용, 자가관상용 등으로”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등 용도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creatures”를 “organisms”로, 같은 앞쪽 중 “Creature”를 “Organism”로 하며, 같은 앞쪽 신청인 중 “Director General”를 “Director”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나목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을 “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검역대상물”을 “시설구분”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수조 수)”를 “(개수)”로 하며, 같은 앞쪽 중 “(조)”를 “(개)”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변경 시”를 “변경 후 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처음”을 “변경 전”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확인(날인)”을 “확인자”로 한다.

별지 제2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1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중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되었음"을 "수산생물
방역사임"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에 관한 특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 시행 전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수입
검역 신청을 위해 생산시설로 신고된 업체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 유예) 제2조제4호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별표 1의2]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요건

1. 인력구성 및 검사능력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p>가. 병성감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총 1인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 2년 이상인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해양)생명의학·어병학·양식학·수산생물학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p>나. 병성감정책임자는 병성감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2.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능력관리
병성감정담당자	<p>가. 병성감정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총 2인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1명으로 한정함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해양)생명의학·어병학·양식학·수산생물학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p>나. 병성감정담당자는 병성감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2.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병성감정보조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등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보조원으로 들 것을 권장한다.
---------	--

2. 시설

가. 시설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나. 권장시설

시 설	규격	비 고
해부임상검사실	1실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소독기구)를 구비하고 외형적 이상을 검사·면담하는 곳으로 해부장비(해부기구), 현미경 및 면담일지 등을 갖추어야 함
사체 처리실	1실	소각 또는 소각시설 및 사체처리기구를 구비하거나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로 무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곳으로 진료실(병성감정필수기자재를 구비)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실험기자재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유전자증폭기(DNA amplification system)	1	Ramping speed: up to 3℃ /sec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파장범위: 190~900 nm 파장정밀도: ±1 nm 파장재현성: ± -0.5
탁상형 원심분리기(Benchtop centrifuge)	1	최대회전속도: 13,200 rpm 온도조절범위: 상온
탁상형 냉장원심분리기(Refrigerated benchtop centrifuge)	1	최대회전속도: 18,000 rpm 온도조절범위: -20~-40℃ 1.5/2.2 mL×48본(angle rotor)

가열기(Block heater)	1	24×1.5 mL×3 block, 상온~150℃
전기영동장치(Agarose gel electrophoresis)	1	Agarose gel 240×126×19 mm 수평형, power supply 포함
겔분석시스템(Gel document system) 또는 자외선작업함(UV illuminator)	1	해상도(Pixel): 1392×1040 or 1688×1248 or 2048×2048 이미지촬영속도: 20~30 FPS UV illuminator 및 폴라로이드 카메라(Polaroid land camera)
저온배양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	온도조절범위: 4~50℃ 히터용량: cord 218W 온도조절정밀도: ±0.2℃
고압멸균기(Autoclave)	1	사용압력: 2.4 PSI 사용온도: 105~135℃
교반가열기(Stirring hotplates)	1	회전수: 60~1,100 rpm 사용온도조절범위: 25~550℃ 열판재질: glass ceramic
건식멸균기(Dry heat sterilizer)	1	가열방식: 자연대류식 멸균온도: 40~200℃ 소독형태: 자외선살균 등
광학현미경(Microscope)	1	대안렌즈: ×10 대물: ×10, 20, 40, 100 중간배율렌즈: 1.6
초저온냉동고(Ultra-low temperature freezers)	1	냉매: CFC free 사용온도: -70℃ 이하
냉동고(Freezer)	2	형식: 서랍식 4단 사용온도범위: -20℃
냉장고(Refrigerator)	2	냉각방식: 독립냉각시스템 형식: 좌우개폐형 냉동냉장 겸용 냉장사용온도: 4℃ 냉동사용온도: -20℃
무균대(Clean bench)	1	청정도: class 100 풍속: 0.3~0.6 m/s 필터종류: HEPA필터 이상 풍량: 40 m ³ /min 살균등 내장 유무: 내장
증류수제조기(Water distillation system)	1	4 L/h 이상
조직분쇄기(Crushers or pulverisers)	1	재질: 스테인레스 회전수: 10,000~30,000 rpm 칼날 수: 1개

분석용 전자저울(Analytical balance)	1	표시방식: 디지털, 소수점 아래 2자리 측정범위: 100~2,000 g
분석용 전자저울(Analytical balance)	1	표시방식: 디지털, 소수점 아래 3자리까지 측정범위: 0.1~200 g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혈청원심분리기(Hematocrit centrifuge)	1	최대회전수: 12,000 rpm 최대용량: 0.04 mL capillary tube × 24 tubes
실체현미경(Stereo-microscope)	1	총배율: 6.3~300 사진촬영장치 ZOOM기능: 1~8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Ultrapur water system)	1	표시방식: 디지털 무기이온제거율: 99%이상 증류수순도: 18.2 mΩ
효소면역측정기(ELISA reader)	1	여기파장범위: 200~1,000 nm 인큐베이터온도범위: 4~45℃ 방출파장범위: <4.0 정확도: ±2.0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HPLC system)	1	UV 검출한계: 안트라센 10 pg 이하 파장범위: 190~800 nm 파장측정정밀도: ±0.1 유량조절정밀도; 99.99
항온수조(Water bath)	1	수온조절방식: 디지털 PID 온도균일도: ±0.24℃ 사용온도범위: 상온~100℃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	1	최대배율: 1,500,000× 분해능: 투과형 0.14 nm, 격자상 0.23 nm 에너지분포광도계내장유무: 유 주사전송전자현미경기능내장유무: 유 가속전압: 80~200 kV 진공도: 2.0×10 ⁻⁶ 냉각방식: 수냉식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1	총배율: 1,000×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조직표본염색장치(Tissue slide staining equipment)	1	슬라이드 Jar 재질: 스테인레스 슬라이드 개수: 11 염색능력: 슬라이드 30장 염색시간: 3 min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	최대자동운전시간: 100시간 이상 배쓰형태: basket 배쓰스테이션 개수: 12개 이상 파라핀스테이션 개수: 2개 이상
조직포매기(Tissue embedding center)	1	사용온도범위: 45~70℃ 4℃ cooling plate 포함
회전식마이크로톰(Rotary microtome)	1	두께조절범위: 0.25~70 μm 작동방식: 전동식
세포배양실(Bio hazard 시설)	1	기류방식: horizontal air-current 풍량: 15 m ³ /min 풍속: 0.3~0.5 m/sec 청정도: class 1000 Main filter: hepa filter 0.12 μm Dop, 99.97% First Filter: pre-filter 50~70% U.V. Lamp: 15W×2ea
Real-time PCR	1	싸이클수: 99 가열속도: max. 2.5℃/sec 온도범위: 4.0~99.9℃ 온도정밀도: ±0.3℃ Excitation wavelength: 400~700 nm
DNA서열분석기(DNA sequencer)	1	전체측정량: 164×970 bp/day 실행정밀도: 98.5% 레이저출력: 500, class III b
회전농축기(Evaporator)	1	회전수: 20~180 rpm 증발능력: max. 20 mL/min(water) 진공도: 399.9 MPa 이하
원심농축기(Centrifuge evaporator)	1	회전속도: 100~2000 rpm 온도제어: thermistor시 ON-OFF 제어 히터: 140W 이상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삼중사중극자형 질량분석기(LC/MS/MS)	1	검출한계: femtogram 이하 Standard mass range: 30~1250 or more High resolution precursor ion selection of less than 0.4 dalton Collision energy 0±2000 eV or more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	1	대안렌즈: ×10 대물: ×10, 20, 40, 100 중간배율렌즈: 1.6 형광필터: blue, green, red
가온기(Slide warmer)		사용온도범위: 5~100℃ 정밀도: 0.35℃

[별표 3의2]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

1.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 각목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나.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2. 이식용 뱀장어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

등록 취소 및 중지·개선·보수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23조의2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중지 또는 개선·보수 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중지 또는 개선·보수 명령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처분 전에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 바. 등록된 수출수산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출수산물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점검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명령 또는 생산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이용한 경우	등록취소		
다. 법 제21조2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2제5항에 따른 생산시설에 대한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명령이나 생산시설의 개선·보수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록취소		
마. 규칙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록취소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	------	------	---------------------

신청기관	기관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지정사항	병성감정책임자 성명
	병성감정담당자 성명

변경사항	변경하려는 사항[기관명(법인명),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주소 등]
	변경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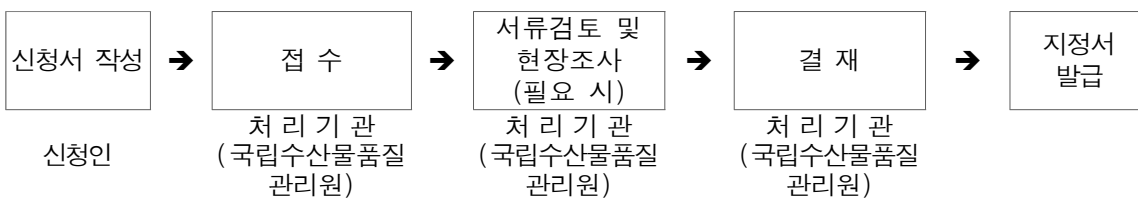
신청인 첨부서류	<p>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p> <p>가. 수산생물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사본 1부</p> <p>나. 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각 1부</p> <p>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시설 및 실험기자재내역 1부</p> <p>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서</p> <p>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1부</p> <p>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1부</p>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나.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처리절차



제2000- 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최초지정연월일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수산
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일자	구분	당초지정사항	변경지정사항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	------	------	---------------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_____)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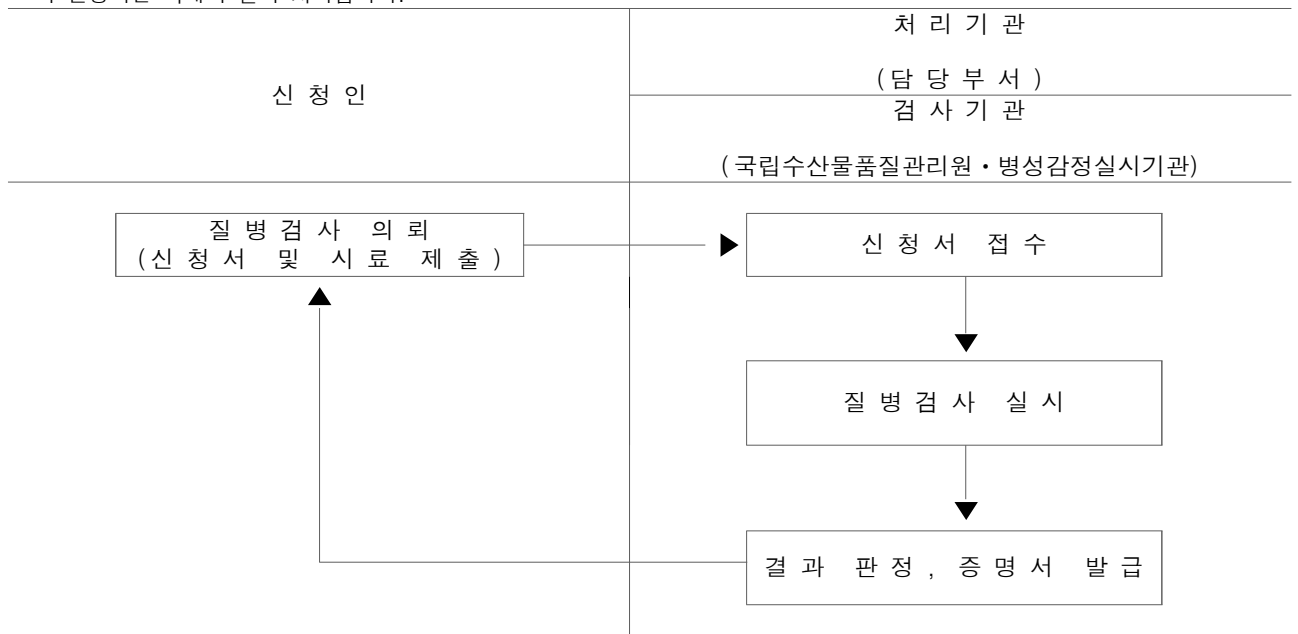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 귀하

첨부물	검사서류	- 37 -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류수산생물 소독·격리 명령서

명령의 종류	[] 소독 [] 격리 [] 소독 및 격리
방류수산생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령내용	명령이유
	수량
	이행기한
	격리기간
명령대상 방류수산생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독·격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

방류수산생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령내용	명령이유	
	수량	
	이행기한	
명령대상 방류수산생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생산시설	등록시설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양식시설 <input type="checkbox"/> 가공시설 <input type="checkbox"/> 보관시설			
	소재지			
	품종	수출희망국가		
	시설내역			
	시설면적(m ²) (수면적)	수조수(개)	연평균 사육미수	비고
변경등록	변경등록사항			
	변경신청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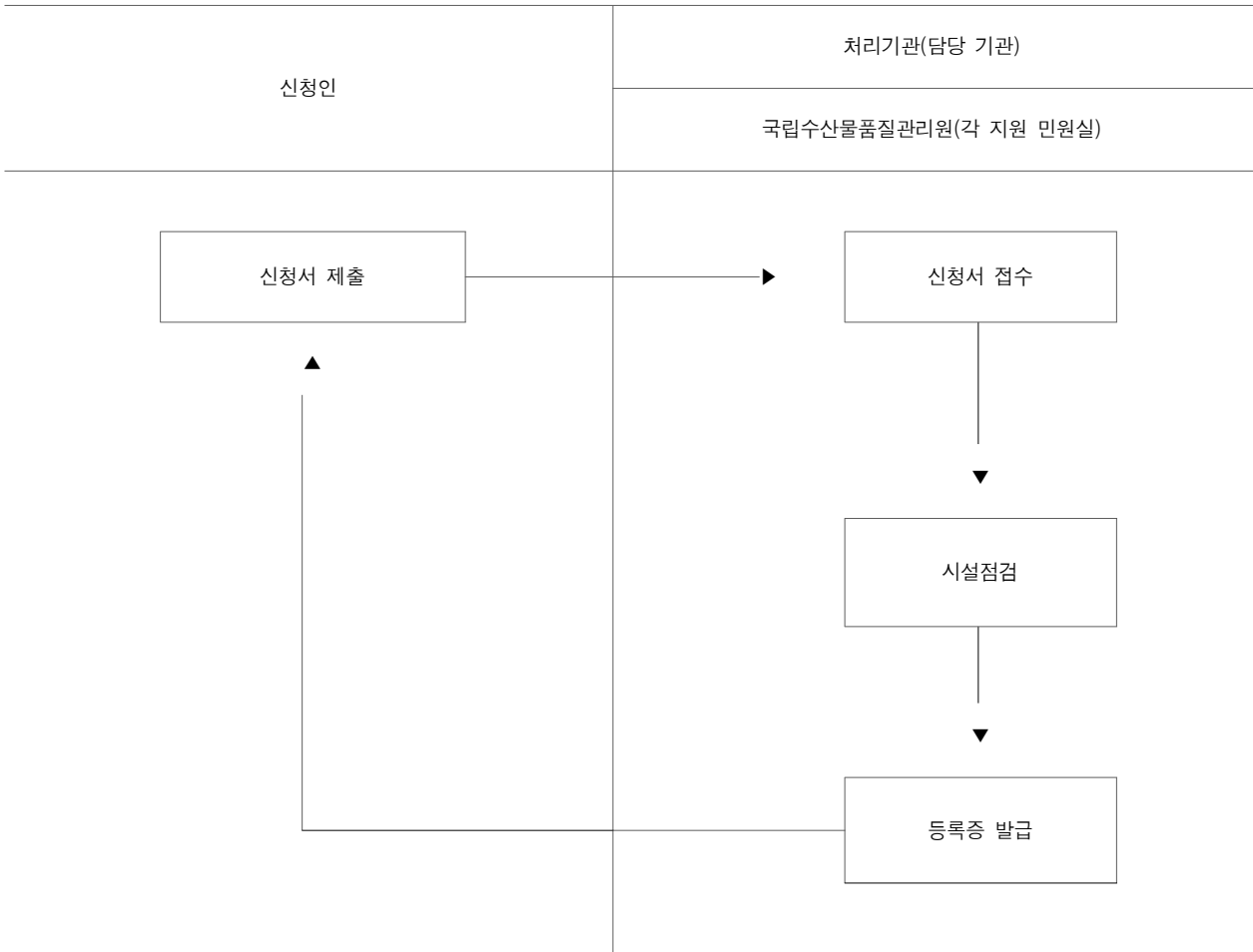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신청인	뒤쪽 참조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신청)	1.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영업의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은 사업자등록증 제출) 2. 양식생물 사육현황(양식시설에 한함) 3. 시설평면도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신청)	1. 수출수산물생물생산시설 등록증 원본 2. 등록사항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쪽)

제 호 <h2 style="margin: 0;">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증</h2>		
업체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등록시설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양식시설 <input type="checkbox"/> 가공시설 <input type="checkbox"/> 보관시설	면허(허가)번호	
소재지		
품종	수출희망국가	
시설면적(㎡) (수면적)	수조수(개)	비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년 월 일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연월일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자

수입금지물건 등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

번호	일자	수입자			수입국	선(기)명	품명 (학명)	수량 (kg, ea)	신고 여부	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	조치 사항	수입자 서명	검역관 확인	결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
- 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Fishery Product Facility**
 - 변경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Fishery Product Facility**
 -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ding Validity Period of Foreign Fishery Product Facility**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Check the applicable brackets

(앞쪽 Front page)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처리기간 Processing time 15일 15days
등록코드(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인 경우) Registration code (For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extending validity period)		

신청인 Applicant Information	■ 업소명 Company name ()	■ 영업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소재지 Address ()	■ 전자우편주소 E-mail address ()
	■ 전화번호 Phone number ()	

등록유형 Type of Registration	<input type="checkbox"/> 최초등록 Initial registration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등록 유효기간 연장 Extention of validity period

해외 수산 생물 생산 시설정보 Facility Information	업소명 Name of facility	생산시설 등록번호(수출국) Registration NO. in exporting coutry	대표자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		국가 Country
	전화번호 Phone number including area/country code		
	전자우편주소 E-mail		
	팩스번호(선택) Fax number including area/country code, <i>Optional</i>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1 (1)·(2)·(6)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Article 27-2 (1)·(3)·(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extention of validity period).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장 귀하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첨부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이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수출국 정부에서 보내온 등록시설 명단에서 확인된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Documents issued by the exporting country's competent authority certifying that the foreign fishery products facility is authorized, registered or declared according to the country'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fishery products.

유의사항 Not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If it is determined that a foreign fishery products facility made registration or alte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ts registration will be revoked according to Article 25-2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처리절차 Procedure Note



신청인
Applicant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수입(재)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 AQUATIC CREATURE QUARANTINE)

(앞쪽)(Front)

처리기간 1. 서류검사: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15일,
※ 검역물의 반입 전에 미리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반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입항일 (Date of Arrival)	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신청인 (Applicant)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			
규격(Size)	자연/양식산 (Wild/Cultured stocks)		자연산(Wild stocks) [] 양식산(Cultured stocks) []
개수(Quantity, C/T)	총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액[Value(US\$)]	용도(Use)		
수출국 (Country of Export)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업체명 (Company name)		등록시설번호 (Registered serial No.)
	주소(Address)		
수출자 (Exporter)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dress)		
선적항 (Port of Shipping)	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항 (Port of Arrival)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Facility name)		지정번호(Registration No.)
	수용일(Date of recep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재)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organisms in accordance with Item 1 of Article 27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0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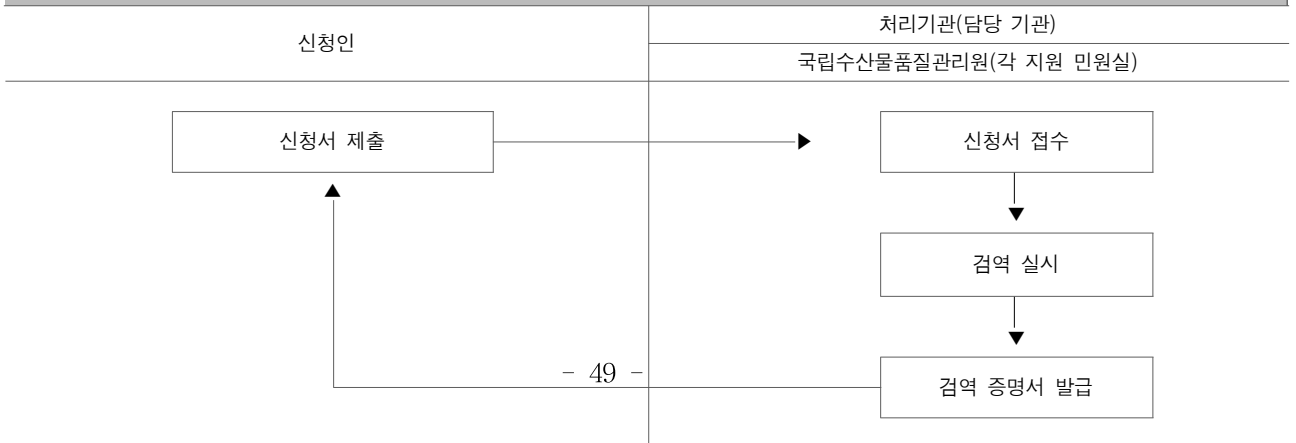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첨부서류	<p>1. 검역신청의 경우</p> <p>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p> <p>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p> <p>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p> <p>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p> <p>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재검역신청의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p>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① 신청번호: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② 신청일: 검역 신청일을 적습니다.
- ③ 화물관리번호: 해당 검역물의 화물관리번호를 적되,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입항일: 해당 검역물의 국내 지정항구 입항일을 적습니다.
- ⑤ 선(기)명: 해당 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⑥ 신청인: 이 신청을 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⑦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명(영어명)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⑧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cm, g, kg) 등을 적습니다.
- ⑨ 자연/양식산: 자연산 또는 양식산을 선택해 적습니다.
- ⑩ 개수: 해당 검역물의 C/T 수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⑪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kg)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 시 괄호 안에 마리수(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⑫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US\$)을 적습니다.
- ⑬ 용도: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조사연구용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⑭ 수출국: 해당 검역물의 수출국가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⑮ 원산지: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⑯ 생산시설: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의 업체명, 등록시설번호(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출자: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업체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⑱ 선적항: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항구 또는 공항을 적되, 해당 검역물의 원산지와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는 경로별로 일자와 선적항을 자세히 적고, 특히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 사유와 일자도 적습니다.
- ⑲ 선적일: 해당 검역물의 선적일을 항구별로 적습니다.
- ⑳ 도착항: 해당 검역물이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㉑ 검역시행장: 해당 검역물이 입고되었거나 입고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DECLARATION FOR IMPORT AQUATIC CREATURE QUARANTINE FOR HAND-CARRIED BAGGAGES)

(앞쪽)(Front)

신고번호(Declaration No.)		신고일(Date)	
-----------------------	--	-----------	--

신고인 (Declarer)	성명(Name)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Country)	성별(Sex)	<input type="checkbox"/> 남성(Male) <input type="checkbox"/> 여성(Femal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_____)			

검역대상품 (Quarantine objective)	품명 (Common name /Scientific name)	개수 (Quantity, C/ T)	중량 (Total weight or n umber)	금액 (Value (US\$))	수입국 (Country of import)	원산지 (Country of or igin)

용도(Use)	
---------	--

선명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그 밖의 사항 (Etc.)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을 신고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organism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Article 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고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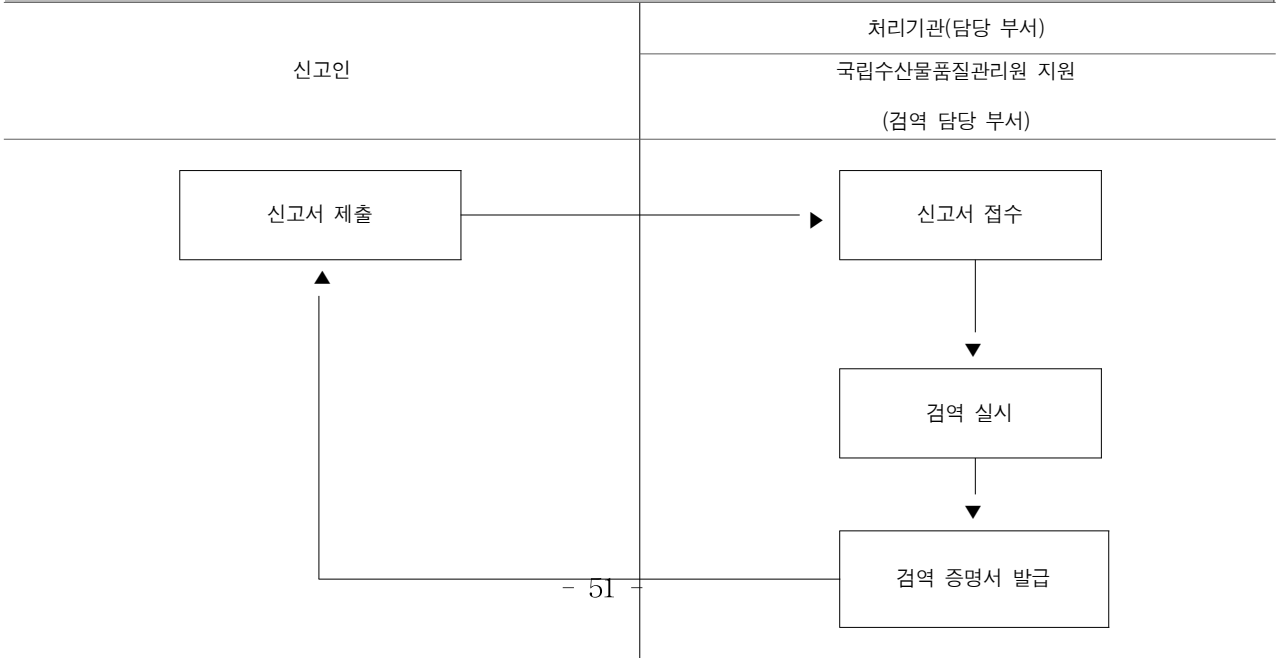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첨부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① 신고번호: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③ 신고인: 해당 휴대검역물을 신고한 자의 성명, 여권번호, 국적,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검역대상품: 해당 휴대검역물의 한글명(영어명), 학명, 개수(C/T), 중량(kg 또는 개수), 수입국 및 원산지를 각각 적습니다.
- ⑤ 용도: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등 용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⑥ 선명 또는 항공기명: 해당 휴대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을 적습니다.
- ⑦ 그 밖의 사항: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수출(재)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EXPORT AQUATIC CREATURE QUARANTINE)

(앞쪽)(Front)

처리기간 1. 서류검사: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15일
※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검역희망일부터 산정합니다.

신청번호(Application No.)		신청일(Date of application)	
-----------------------	--	--------------------------	--

수출자 (Exporter)	성명(Name)	업체명(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성명(Name)	업체명(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		규격(Size)	
개수(Quantity, C/T)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액[Value(US\$)]		용도(Use)	

수입자 (Importer)	회사명 (Company nam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선적항 (Port of shipping)		선적일 (Date of shipping)	
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		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Facility name)	지정번호(Registration No.)
	수용일자(Date of reception)	검역희망일(Expected date of quarantine)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List of disease requested by import country)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재)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organis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4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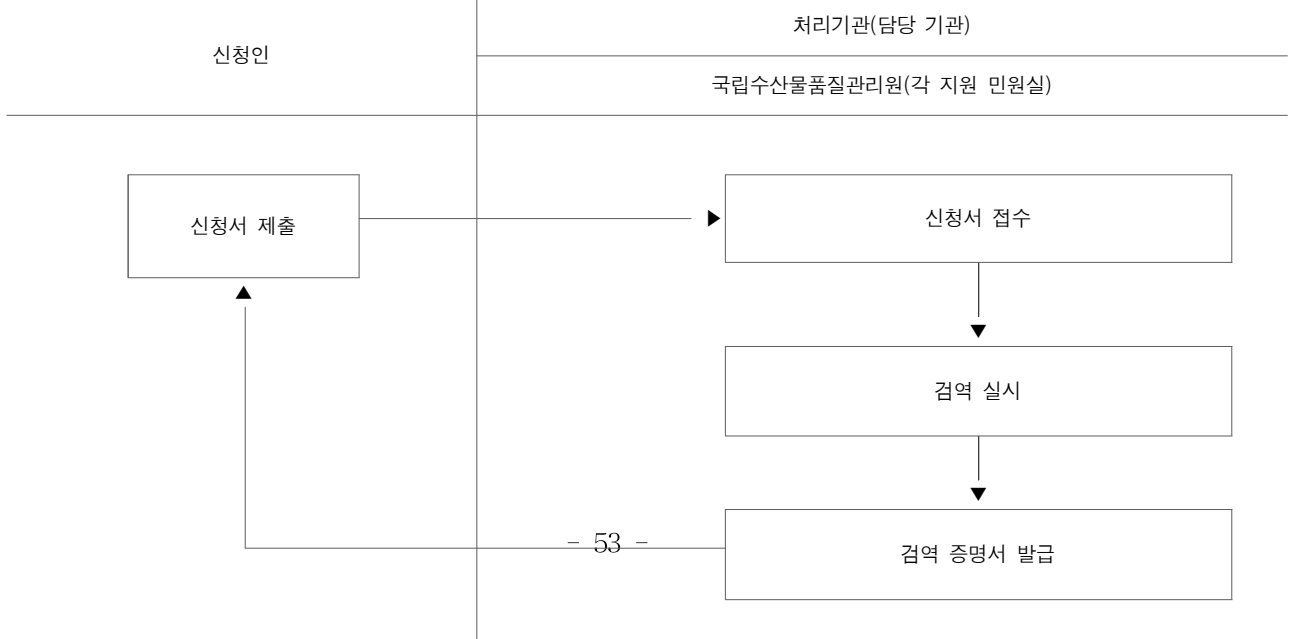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

<p>첨부서류</p>	<p>1. 검역신청의 경우</p> <p>가.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나.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2. 재검역신청의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p>	<p>수수료 없음</p>
-------------	--	-------------------

작성요령

- ① 신청번호: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② 신청일: 검역 신청일을 적습니다.
- ③ 수출자: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자의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 ④ 생산시설: 양식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생산한 양식장명, 자연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집합한 장소를 적습니다.
- ⑤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영어명)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⑥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cm, g, kg) 등을 적습니다.
- ⑦ 개수: 해당 검역물의 C/T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⑧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kg)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 시 괄호 안에 마리수(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⑨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출 금액(US\$)을 적습니다.
- ⑩ 용도: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조사연구용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⑪ 수입자: 해당 검역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회사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⑫ 선적항: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⑬ 선적일: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날짜를 적습니다.
- ⑭ 목적지: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명(항구·공항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⑮ 운송수단: 해당 검역물을 운송하는 수단인 항공·선박명을 적습니다.
- ⑯ 검역시행장: 해당 검역물이 입고되었거나 입고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수입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수출검역 증명서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CREATURE QUARANTINE)			
검역증번호(Certificate No.):			
수출자 (Exporter)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_____)		
수입자 (Importer)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_____)		
품명 (Common name)	학명 (Scientific name)	개수(Quantity, C/T)	총량 (Total weight or number)
생산시설 (Aquaculture est abishment)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_____)		
검역대상질병(Specified disease)			
선적항(Port of shipping)		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국가(Country of destination)		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비고(Remark)			
위의 수산생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검역하였으며, 위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quatic organisms described above have been quarant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4 of Article 34_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and that they are free from the specified disease described above.			
발행 연월일(Date of Issu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직인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검역시행장 [] 지정 신청서 []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구분	<input type="checkbox"/> 육상수조 <input type="checkbox"/> 육상양식 <input type="checkbox"/> 수족관시설 <input type="checkbox"/> 온도조절장치시설 <input type="checkbox"/>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	---

검역관리인	성명	자격
-------	----	----

신청면적 (개수)	m ² (개)
--------------	--------------------------------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유입수	환수량	톤/일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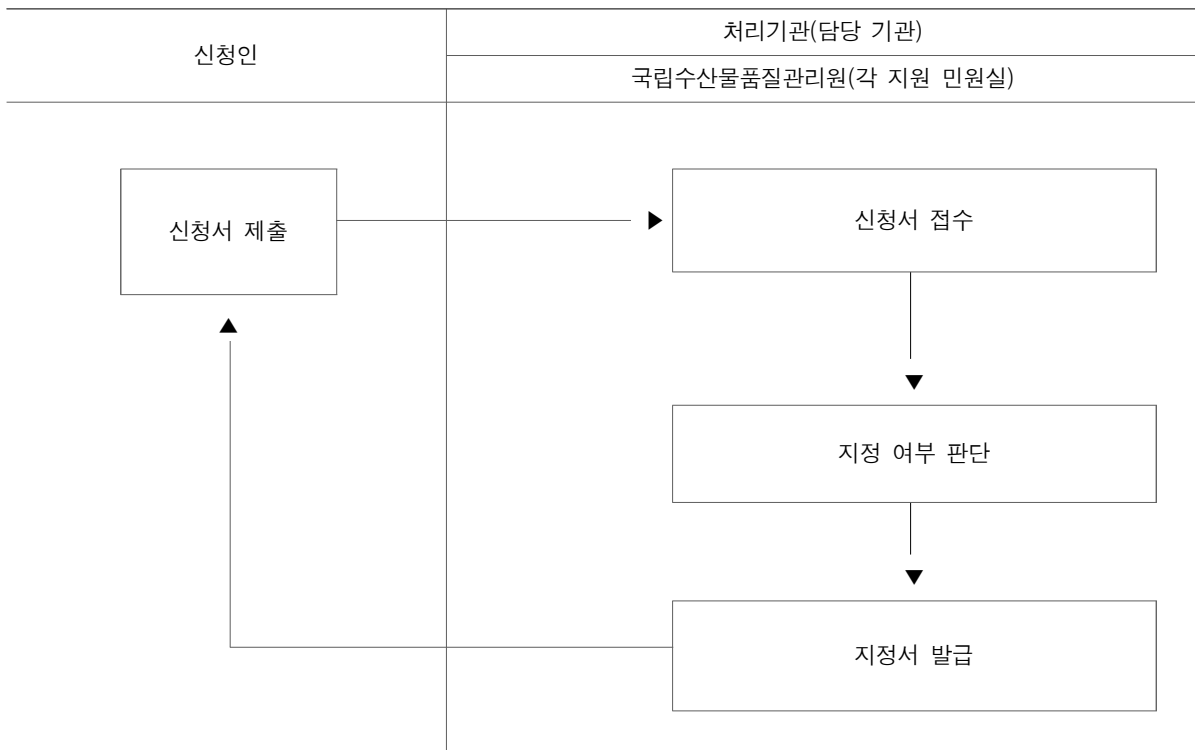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p>1. 지정신청의 경우</p> <p>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p> <p>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p> <p>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합니다)</p> <p>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p> <p>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p> <p>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p> <p>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p> <p>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p> <p>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p> <p>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p> <p>2. 변경신청의 경우</p> <p>가.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p> <p>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지정신청의 경우</p> <p>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p> <p>1) 사업자등록증</p> <p>2) 토지등기사항증명서</p> <p>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p> <p>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p> <p>1) 사업자등록증</p>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h2 style="margin: 0;">검역시행장 지정서</h2>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역시행장 명칭				
검역시행장 주소	(전화번호:)			
지정사항				
시설구분				
검역관리인 성명				
검역관리인 임무				
지정면적 (개수)	m ² (개)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유입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지정기간				
지정조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뒤쪽)

연월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확인자

수산질병관리원 [] 개설 신고서
 []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면허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산질병 관리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인		
수산질병 관리사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제1항 및 제37조의11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 개설·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합니다) 사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수입증지는 뒤쪽에 붙임)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없음

작성요령

수산질병관리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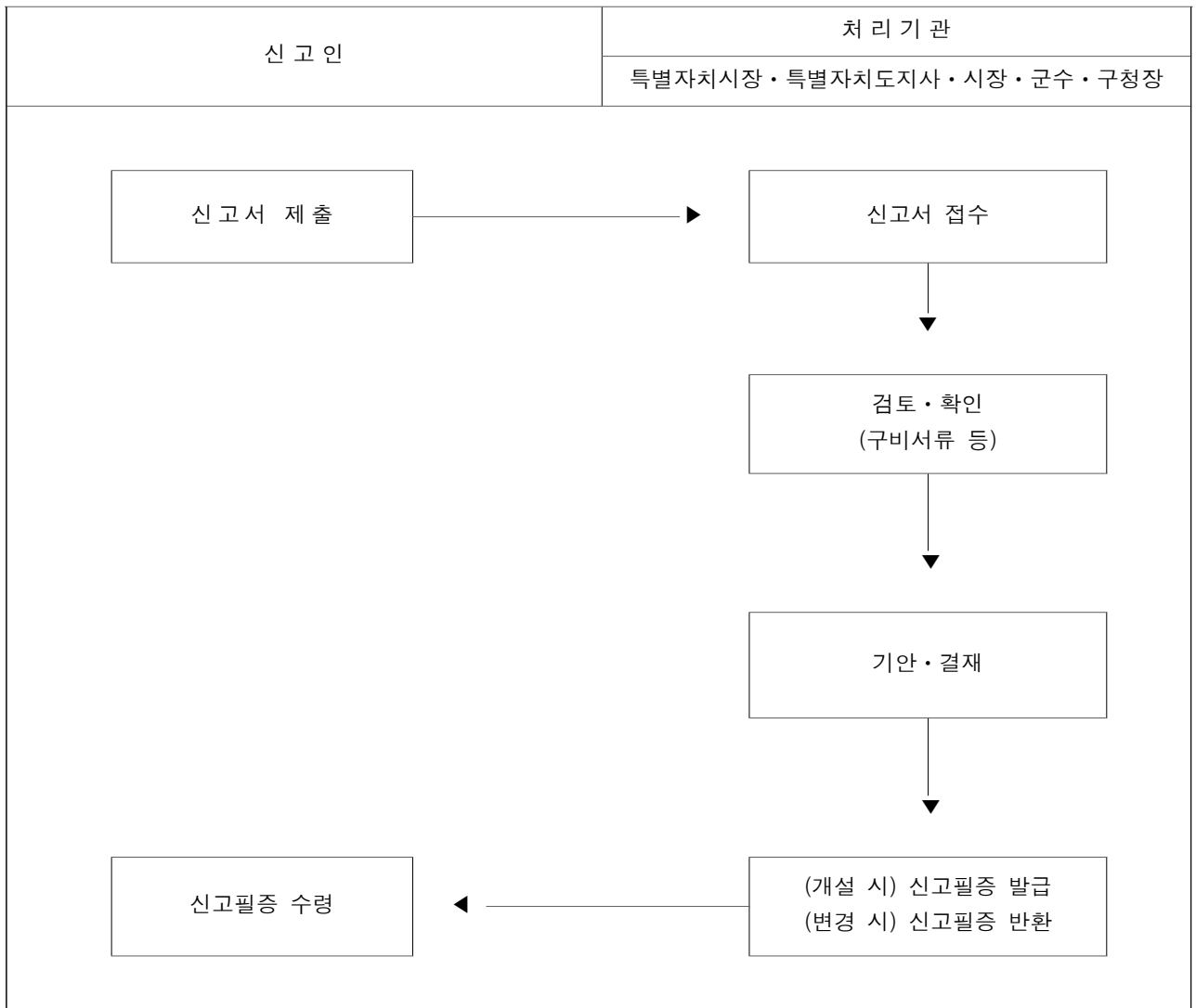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수수료

※ 수입증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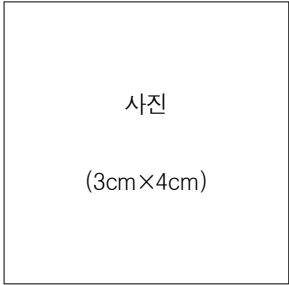
제 호
수산생물방역관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사진 (2.5cm×3cm)</p> </div>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6mm×80mm [백상지 80g/m²]

(뒤쪽)

수산생물방역관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수산생물질 병 관리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앞쪽)

제 호
수산생물검역관증
 사진 (3cm×4cm)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54mm×86mm [백상지 80g/㎡]

(뒤쪽)

수산생물검역관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1.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검역을 위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앞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수산생물방역사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50px; height: 15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p>사 진</p><p>(3.5cm×4.5cm)</p><p>○ ○ ○</p></div>

56mm×80mm[백상지 80g/m²]

(뒤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제 호 수산생물방역사증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u>연어알파바 이러스감염증</u></p> <p>2.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u>한다</u>.</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수산생물전염병) ----- ----- ----- ----- -----.</p> <p>1. ----- ----- ----- 연어알파바 이러스감염증, <u>틸라피아레이 크바이러스병</u></p> <p>2. 3. (현행과 같음)</p> <p>4. <u>양서류의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 ----- <u>위촉 또는 임명</u>----- ----- <u>하</u> <u>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2. 3. (생략)

<신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체장괴사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립수산물품

③ -----

-----.

1. -----
----- 출입 및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질문

2.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 -----

----- 수당 등 -----
-----.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실시방법)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임상검사: 수산생물의 유행·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2. 정밀검사: 병리조직, 혈청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신 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실험기자재 및 검사능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의3호 서식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신청서의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의3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이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변경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병성감정책임자 또는 담당자

제15조(역학조사) <신 설>

3. 소재지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교육·감독, 검사능력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 업무 평가와 제6항에 따른 교육, 감독, 검사능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역학조사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 그밖에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되었거나 양식산업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2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② -----
제1항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3조의2(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 등 영업의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단, 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양식·가공 또는 보관

하는 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2. 양식생물 사육현황(양식시설에 한한다.)

3. 시설 평면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증 원본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
2.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3.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품종

⑥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또는 수출수산물생산시설 개선·보수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 개선·보수 명령(이하 “중지·개선·보수 명령등”이라 한다)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등록 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시설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폐업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수산물검역관은 법 제25조제1항-----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물건 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 명령을 해야 ----. -----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폐기·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수입금지물건 등 휴대물품
----- 기록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① 법 제25조2의제1항에 따라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서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 해당 수출국 정부에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검역물을 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

칭

2. 국가명 및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③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이전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변경등록신청서를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신고 전까지 지정검역물을 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해외수산물생산시설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정검역물을 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변

경등록 또는 등록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수입검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정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직접 요청 할 수있다.

⑧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3(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외수산물생산시설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신 설>

<신 설>

해외수산물생산시설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고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3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수입중단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3항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당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운영자에게 문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 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 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해외수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①

-----, 법 제28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

② 수산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독·유해물질은 수입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③ (생략)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

 ----- 포함하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물검역관이 요청하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31조제5항-----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략)

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
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
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라. (생략)

2. (생략)

③ ~ ⑦ (생략)

<신설>

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
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서류(건물등
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
항증명서 등)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
제32조제6항제3호에 따른 검역
시행장의 폐업 등의 사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등에 관
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
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1. (생략)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
3.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4. 5. (생략)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

1. (현행과 같음)
2. -----(WOAH)

--

3. -----(WOAH)

4.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조치를 -----

----.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이후

수입위험분석을 할 수 있다.

1. -----

위 변경 여부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범위의 변경 여부

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

⑤ (생략)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1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 변경

1의2. -----
----- 변경

2. -----

----- 결정

3. ----- 변경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산질병관리원에 원본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수수료의 면제 등)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
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
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
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 · 제2
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3. 제29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방법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변경한 경우